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보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4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2. 27.

발의의원 : 김보경 의원,

박영동 의원, 신달호 의원

1. 제안이유

불용의약품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군수 등의 책무를 강화하고, 불용의약품 등이 원활하게 수집되도록 수거용기 비치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불용의약품 등 관리를 위한 행·재정적 지원 책무 신설(안 제4조제3항)
- 나.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대한 약사의 책무 신설(안 제4조의2)
- 다. 불용의약품 등 수집에 대한 군민의 책무 신설(안 제5조제2항)
- 라. 수거용기 비치장소 구체적 명시 및 안내 강화(안 제6조)
- 마. 수거용기 위치와 수거방법 홍보·교육 의무 신설(안 제8조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관계법령 : 「약사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”을 “불용의약품 등”으로, “군민”을 “대구광역시 달성군민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활동(이하 “수집 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활동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불용의약품 발생방지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이 불용의약품 발생방지”로, “수집 등에 군에 거주하는 주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”를 “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단체”를 “기관 및 단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약사의 책무) ① 군에 약국을 개업신고한 약사(이하 “약사”라 한다)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.

② 약사는 복약지도 시 불용의약품 등의 보유를 최소화하도록 그

수집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의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수가 제4조에 따라 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”을 “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발생된”을 “발생한”으로, “보건소 등에서”를 “보건소(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등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에 대한”으로, “등 수거용기”를 “등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거용기”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불용의약품 등의 수집) 군수는 군 소재 약국, 보건소, 읍·면행정복지센터 등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비치하고, 그 위치를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불용의약품 등 운반·처리)”를 “(불용의약품 등의 운반·처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”을 “통한”으로 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홍보 및 교육) 군수는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위치와 수거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생한 <u>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</u>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<u>군민</u>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불용의약품 등</u> ----- ----- --- <u>대구광역시 달성군민</u>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. (생략) 3. “관리”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(이하 “<u>불용의약품 등</u>”이라 한다)을 수집·보관·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<u>활동</u> (이하 “<u>수집 등</u>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활동</u> -----.
제4조(군수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<u>군수</u>”라 한다)는 <u>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 등에 군에 거주하는 주민(이하 “<u>군민</u>”이라 한다)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·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, 불용의	제4조(군수의 책무) ① ----- ----- <u>대구광역시 달성군민</u>(이하 “<u>군민</u>”이라 한다)이 <u>불용의약품 발생방지</u>----- <u>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</u> ----- -----. ② ----- -----

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③ (생 략)

<신 설>

제5조(군민의 책무) ① 군민은 의사·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
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군 소재 약국, 보건

----- 기관 및 단체-----.

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4조의2(약사의 책무) ① 군에 약국을 개업신고한 약사(이하 “약사”라 한다)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.

② 약사는 복약지도 시 불용의약품 등의 보유를 최소화하도록 그 수집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의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수가 제4조에 따라 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군민의 책무) ① -----
-----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-----.

② ----- 발생한 -----
----- 보건소(보건지소

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불용의약품 등 수거용기에 분리·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불용의약품 등 수집) ① 군

보건소장이나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장소를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, 불용의약품 등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제7조(불용의약품 등 운반·처리)

①·② (생략)

③ 군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.

<신설>

제8조·제9조 (생략)

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등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에 대한 ---- 등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거용기---.

제6조(불용의약품 등의 수집) 군수는

군 소재 약국, 보건소, 읍·면행정복지센터 등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비치하고, 그 위치를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불용의약품 등의 운반·처리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통한 -----

-----.

제8조(홍보 및 교육) 군수는 군민들이

적극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위치와 수거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제9조·제10조 (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)